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04호
- 나. 발 의 자 : 김경 의원 외 11명
- 다. 발의일자 : 2024년 8월 12일
- 라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14일

2. 제안이유

- 2024년 5월 20일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시행됨에 따라 ‘서울특별시립미술관’의 관람료 면제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여 임산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시립미술관 무료 관람 대상에 임산부 본인 추가(안 제9조제1항 제18호 신설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임산부가 시립 문화·체육시설 이용할 때 입장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한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시행(2024.5.20.)에 맞추어 임산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음.

나. 개정의 필요성

- 2021년 통계 기준 OECD 회원국(38개국) 평균 합계출산율은 1.58명이었으며, 우리나라는 0.81명(2021년)으로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를 나타내면서 2013년부터 11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음.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0.55명을 기록해 전국 17개 시·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.
- 서울시는 올해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‘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’로 총 1조 7,77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, 임산부 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·의료·경제·양육 등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마련하고 있음.
- 정부는 이미 2011년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배려하기 위해 국립공연장,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관람 시 할인을 시행하고 있으며, 서울시의 출자·출연 기관인 세종문화회관도 임산부가 일부 공연을 관람할 때 관람료의 20%를 할인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음.

- 한편, 「2023년 임신부 배려 인식 및 실천수준 조사 결과」에 따르면 임신부가 임신기간 중 가정에서 겪은 일 중 가장 불만족 혹은 부정적인 경험으로, ‘임신으로 인한 신체적·정서적 변화에 대한 이해·지지 부족’이라는 응답이 34.5%를 차지한 바, 각종 재정적인 지원책과는 별개로 임신부에 대한 친화적인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.
- 이에 서울시의회는 재정적인 지원 이외에도 임신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지난 4월 「서울특별시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발의하여 현재 제정·시행되고 있음.
- 따라서 동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취지를 반영하여 임신부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임신·출산에 대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.

다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(1) 관람료 면제(안 제9조제1항제18호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1)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, 그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에 서울시는 시민의 문화·예술 향유기회 증진을 위하여 미술관을 건립 및 운영

1) 제161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

하고 있으며, 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「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 정해놓고 있음.

- 또한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²⁾에 따라 사용료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바, 공익상 필요하다고 할 때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음(법제처 2016. 9. 22. 의견제시 16-0260). 이에 미술관을 이용하는 시민 중 일부에 대해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미술관의 관람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.

따라서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관람료 면제 대상자로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려는 동 개정안에는 법제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 「2023년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수준 조사 결과」에서 도움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‘배가 나오지 않아 임산부인지 티가 나지 않아서’(50.8%)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함.

특히 동 개정안의 임산부 기준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설정되었으므로 신체적 외형만으로는 정책 수혜 대상자인 임산부를 판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.

- 이에 서울시는 임산부를 증빙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여 ‘서울지갑’ 앱을 통해 보급하려는 바, 관람료 면제 자격확인 시 이를

2) 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적극 활용하여 임산부가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< '서울지갑' 앱에 임산부 모바일 앱카드 예시 >



의안번호
2004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
	김경 의원	'24. 8. 12.	문화체육관광위원회
주요내용	<p>〈개정 필요성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시행('24.5.20.)에 따라 '서울특별시립미술관'의 관람료 면제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여 임산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<p>〈주요 입법 요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무료 관람 대상에 임산부 본인 추가(안 제9조제1항제18호 신설) 		
추진경과	○ '24. 8. 12. 일부개정조례안 발의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김경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 및 시행('24.5.20.) 중인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입장료 등 감면)를 근거로 하여 市가 운영중인 미술관에 임산부 관람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, 특이사항 또는 쟁점사항이 없어 원안 수용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</p> <p>▶ 제5조(입장료 등 감면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서 설치·관리하는 문화·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·사용료·관람료(이하 "입장료 등"이라 한다)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/div>		
대응방안			
상 임 위 처리결과			
향후계획			
담당부서	박물관과	팀장 노은영(☎2133-4183)	담당 정익승(☎2133-4237)